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안 제3조)
- 다. 보조금등 지원(안 제4조)
- 라. 포상과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안 제6조 ~ 제7조)
- 마. 학교체육의 진흥(안 제8조)
- 바. 체육시설의 설치 등(안 제9조)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 나. 예산조치: 2015년 848,768천원 반영
-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그 밖에 사항

1) 입법예고(2015. 7. 3 ~ 7. 23)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등 지원)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3.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활동
8. 국내·국외 대회의 유치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10.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체육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은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성별의 운동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관련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체육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제4조(보조금등 지원)

나. 관련조문

-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제4조(보조금등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5년 예산

나. 추계 결과

- 2015년 예산 : 848,768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전문체육활동 육성 및 단체운영 지원 : 751,968천원
-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37,500천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 : 16,600천원
-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8,400천원
-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 26,600천원
- 광장지도자 운영 : 7,700천원

3. 자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금 및 자체재원(군비)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출		848,768	848,768	848,768	850,000	850,000	4,246,304
		848,768	848,768	848,768	850,000	850,000	4,246,30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48,768	848,768	848,768	850,000	850,000	4,246,304
	도비	15,450	15,450	15,450	16,000	16,000	78,350
	군비	833,318	833,318	833,318	834,000	834,000	4,167,95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